

(학술강연회)

中國의 改革과 法制의 發展

발표자 : 쟁샤니(曾憲義) 교수 (中國人民大學 法大學長)

통 역 : 한다유안(韓大元) 위원 (中國人民大學 法學研究所 副所長)

일 시 : 1993년 3월 22일 오후 4시

장 소 : 韓國法制研究院 4층 회의실

차 례

I. 立法節次의 變化와 立法의 活性化

II. 法의 執行과 法曹人

III. 訴訟의 增加와 法意識의 향상

IV. 外國法의 受容과 傳統法制의 繼承

[討論要旨]

국제적 흐름에 따라 중국은 지금 改革과 開放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과 개방의 과정에서 중국은 외국의 많은 제도를 받아들이고 외국과의 활발한 교류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잘 아시다시피 1976년까지 중국의 경제와 법제의 발전은 큰 제약을 받게 된다. 나라의 모든 경제발전과 법제의 발전이 정치상태에 있어 왔다. 그러나 이것은 文化大革命과 함께 1976년에 끝나게 된다. 그리고 1978년부터 중국은 경제와 법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침을 세우게 된다. 1978년부터 지금까지 14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중국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특히 작년에

등소평씨의 경제를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는 새로운 지시하에서 중국의 경제는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은 광주와 같은 經濟特區에서 경제발전이 빠를 뿐만 아니라 연해지방이나 각 성 소재지 등 큰 도시에서도 경제발전이 빠르고對外的인 交易도 급증하고 있다. 과거 40여년간 진행되어온 고도의 집중 計劃經濟를 포기하고 市場經濟原理를 공식적으로 도입하였다. 이러한 시장경제원리의 도입은 법학제도, 법제발전 또는 법학교육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그래서 1978년부터 중국의 법제정비사업의 추진을 서두르게 된다.

I. 立法節次의 變化와 立法의 活性化

첫째로 그 변화를 보면 경제발전에 따른 法制需要에 따라서 立法事業을 추진하게 된다. 1979년부터 1993년까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210여건에 이른다. 중국은 법제의 발전을 위하여 먼저 立法體制를 개혁하였다. 과거의 중국의 입법체제를 보면 주로 中央執權의 인立法을 기초로 하고 있었다. 즉, 그 당시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만이 법률을 제정할 수 있었다. 중국은 땅이 넓고 인구가 많고 각 지방의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전국인민대표대회는 1년에 한 번씩 밖에 개최를 하지 않았다. 경제발전에 따라서 과거의 입법체제로서는 입법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1979년도부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입법체제를 개혁하기로 결정하였다. 중국의 헌법 규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중국의 최고권력기관으로 되어 있다. 개혁에 의해서 마련된 새로운 입법체제에 따르면, 최고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폐회하는 기간에 그 상무위원회에서도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가 모두立法權을 가지게 된다. 또 다른 입법체제의 개혁으로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조선민족이 있는 지방이나 특수한 지방의 큰 도시에 입법권을 委任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위임을 받아 국무원에서 법률을 제정할 수 있으며 동시에 법률에 관한 일부 규정도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임으로 국무원에서 제정할 수 있게 되었다. 1979년부터 1993년까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관한 문건이 300여건에 달한다. 그리고 79년부터 93년까지 각 성에서 또는 조선민족 자치구에서 제정한 지방성법규가 2300여건에 달하며 14년간 국무원에

서 제정한 행정법규가 500여건에 달한다. 최근 5년간 국무원에서는 192건의 행정법규를 제정하였다. 14년간의 입법개혁을 통해 중국에서는 기본적인 법제는 모두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공법, 형법, 소송법, 민법통칙 및 기본적인 경제법규도 제정하였다. 또한 대외경제발전의 요청에 따라 섭외법도 많이 제정하였다. 이러한 법의 제정은 외국기업이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마련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중국의 14년간의立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였다.

Ⅱ. 法의 執行과 法曹人

두번째로, 14년간 법만 제정한 것이 아니라 法의 執行에 있어서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 중국의 역사발전에서 보면 법이라는 것은 제정만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법을 제정한 다음에는 법대로 집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표(한국에서의 국회의원), 지방인민대표대회 지방의원들은 정기적으로 전국적인 법률의 집행상황, 혹은 지방성법규의 집행상황을 監督하고 있다.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와 지방인민대표대회 대표가 법의 집행을 감독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물론 法院과 檢察을 통해서도 법의 집행을 감독하고 있다. 중국의 裁判制度는 다음과 같다. 전국적으로 최고법원이 있고, 각 성과 직할시에 고급 법원이 있다. 그리고 성안에 중국인민법원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300여개의 중국인민법원이 있다. 그리고 각 현, 시에 2700여개의 기충법원이 있다. 현 아래에는 인민법정이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1450개의 인민법정이 있다. 법원과 함께 檢察院이 또한 법집행을 감독하고 있다. 검찰원은 주로 법률의 집행을 감독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주된 기관인 것이다. 중국 검찰원의 중요한 역할의 하나로는 나라와 각 지방의 위법자들에 대해서 법률 집행을 감독하는 것이다. 중국의 고급간부들의 違法行爲에 대해서도 검찰원에서는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중국에서 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중요한 제도의 하나는 辯護士制度이다. 지금 중국에는 약 4만여명의 변호사가 있다. 중국의 변호사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다. 전문적으로 변호사직을 맡고 있는 정식변호사와 겸직변호사이다. 예를 들

면 중국인민대학 법대교수들 중에서도 나라의 허가를 맡아 변호사 사무소를 설립한 교수들도 있다. 이처럼 法大教授들은 兼職辯護士를 할 수 있다. 4만여명의 변호사는 중국의 인구비례를 감안하면 아주 적은 숫자이다. 등소평은 중국에 100만여명의 변호사가 있어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중국의 법원에는 약 20만명의 법관이 있고 검사는 19만명에 달한다. 물론 검사와 판사에 의해서만 법률의 집행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래서 중국에는 각 지방마다 人民調停委員會가 있다. 조정위원회는 민간적인 조직이다. 농촌에서는 조정위원회 대표를 총 인민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도시에서는 주민위원회가 조정위원회 위원을 선출한다. 지금 중국에는 인민조정위원회가 600만여개에 달하며 조정위원이 500만여명에 달한다. 인민조정위원회에서 조정위원으로 있는 사람들은 국민들에게 공정하고 국민들을 위해 일해야 한다.

III. 訴訟의 增加와 法意識의 脊상

중국의 전통문화를 보면 중국 국민들은 법원에 가고 訴訟을 제기하는 일을 꺼려하는 성격이었다.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서로의 인간관계가 해를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춘추전국시대에는 소송이 없는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하여, 사회의 많은 분쟁을 법률로 해결하지 않고 禮로 해결하였다. 이러한 禮治의 폐단의 하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법률로 자신의 자유와 권리 를 보호하도록 할 수 없게 하였다는 점이다. 지난 14년간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국민들은 의식가운데 소송을 걸기 싫어하는 관행을 무시하고, 분쟁이 생기게 되면 法을 통해서 紛爭을 해결하려는 意識을 갖게 되었다. 농촌에서나 도시에서나 국민들은 이제 法으로 모든 紛爭을 해결하려는 의식을 갖게 되어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 예를 들면, 일반시민이 공무원을 고발하는 사례도 생기게 되었다. 중국의 전통을 보면 백성이 관리를 상대로 하여 訴訟할 수 없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만약 백성이 관리를 상대로 소송하게 되면 백성은 큰 벌을 받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금 중국에는 行政訴訟法이 공포되어 각급 법원에서 行政審查를 할 수 있다. 법원의 행정성은 국민들이 행정기관이나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을 고발하면 그 사건을 조사하게 한다. 중국인민대학 법과대학 교수 가운데는 최고법원 행정성으로 가신 분도 있다. 중국에서 최고법원의

행정성은 국민들이 고급공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사건을 주로 관할하고 있다. 최근의 행정소송에서는 국민들이 행정기관이나 고급공무원을 상대로 소송한 결과 국민들이 승소하는 사례가 많게 되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어느 큰 백화점에 두 아가씨가 물건을 사려 갔는데 나올때 그 상점의 물건이 없어져서 몸을 수색당했다. 예전 같으면 이런 경우에 그 백화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염두도 낼 수 없었다. 그러나 이 두 아가씨는 몸을 수색당하면서 이것이 人權侵害라고 생각하고 민사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심사를 거쳐 몸 수색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신문에 공개적으로 사과하도록 하고 경제적으로 보상을 하게 했다.

또다른 예를 들면 중국의 하북성에 있는 큰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배를 경영하는 어느 支配人이 檢事에게 사기꾼으로 몰리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이 지배인이 경영하는 회사는 경제적으로 큰 시련을 맞게 되었다. 그래서 이 지배인은 그 지방의 법원에 소송을 내게 되지만 그 법원은 그 사건이 그 법원에서 관할할 일이 아니라고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호남성에서 인민대회를 할 때 지방의 한 인민대표가 이 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래서 전국인민대표대회 법제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전문적으로 조사하였다. 그 법제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고 마지막에는 그 법원에서 판결을 하여 그 檢事로 하여금 支配人에게 經濟的 補償을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지금의 행정소송을 보면 농민이 행정부의 대표를 상대로 소송하고, 공장 또는 상점의 지배인이 공장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대해서 소송하는 케이스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런 예에서도 보듯이 이제 국민들은 법률을 통하여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국민들의 法意識이 높아지게 되자 행정기관이나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은 법의 준수와 올바른 법집행에 대해 압력을 많이 받게 된다.

IV. 外國法의 受容과 傳統法制의 繙承

마지막으로 外國의 法을 受容할 때 어떤 원칙에 의해 어떻게 법을 수용해야 되는가 하는지를 간단히 살펴본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지난 42년간 줄곧 계획경제를 실시해왔다. 지금은 市場經濟原理를 도입하고 있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

과 경제적 교류를 하며 그들의 제도를 배우고 있다. 중국의 경제제도나 경영방식도 외국의 좋은 제도에 많이 접근해야 한다. 法制면에서도 중국의 법률제도와 국제적으로 공인된 제도와의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국제적 요청에 따라 중국의 입법사업도 외국의 공통되는 제도와 규칙을 따르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된다. 知識財產權 (즉 知的所有權) 특히 著作權에 관한 法制도 獨逸學者들의 도움을 많이 얻어서 마련된 바 있다. 중국인민대학에는 독일에서 8년간 著作權法을 공부한 분도 객원교수로 계신다. 또한 독일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中國人民大學法大에서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著作權法의 연구심사를 하게 되었다.

중국의 조세법이나 세법 또한 세계에서 공용되는 원칙에 따라 규정되며, 이런 규정에 따라 담세능력에 비례한 조세를 부과하게 된다. 중국세법의 규정들은 홍콩이나 지방지구에서 회사에 대해 세를 받는 제도를 참고로 한 것이다. 그 세법에 규정된 세의 비율은 3/100 정도가 된다. 그러한 조세비율은 다른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접근하게 된다. 1992년에 중국은 해상법을 제정하였다. 해상법은 15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12장은 세계에서 공인되고 있는 해상법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참고로 해서 제정한 것이다. 이와같이 중국의 海商法은 국제관례를 많이 도입한 것이고 동시에 국제적인 海商法의 발전추세도 많이 고려하였다. 이와같이 중국은 경영방식이나 경제의 발전을 위해 외국의 좋은 제도와 법을 수용하여 경험으로 삼는다.

중국은 외국의 법제도를 수용하면서도 중국의 傳統的인 文化도 보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중국의 特性에 맞게 외국의 법과 제도를 받아들이려 한다. 예를 들어 중국의 調停制度는 중국고유의 제도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조정제도는 아직까지 보존되고 있다. 중국은 나라가 크고 12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에 비해 법관은 10만여명 밖에 안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조정제도는 옛날 원나라때부터 이용되기 시작하여 그 이후 중국 고유의 분쟁해결제도로 정착되어 왔다. 그런 이유로 중국 사람들은 이 조정제도에 대해 친근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모든 분쟁을 법률로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분쟁, 즉 민간적 또는 가정적 분쟁은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정제도를 통해서 해결하려 한다. 법률에는 분쟁이 생기면 조정제도를 통해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당사자 중 한 쪽이 조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인 분쟁에 대해 법원에 가지 않고

조정제도를 통해 해결하려 한다.

옛날 중국의 법률사전을 보면 법률에서 論理와 平等, 道德을 많이 강조하였다. 특히 역사적으로 도덕을 많이 강조하였다. 고대의 사전을 보면 제자는 스승을 존경해야 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 사회여론의 질책을 받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으로도 범죄로 규정되었다. 그래서 중국의 가족법도 역시 이 원칙을 반영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살펴보면 부모가 노쇠하고 노동경제력을 상실한 때에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 만약 자식이 경제적으로 부모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법원에서는 재판을 통해 법률적으로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도록 강제하게 된다. 또한 동시에 부모가 자식에 대한 법률상의 의무도 수행해야 한다. 부모가 자기 자식에 대해서 법률상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여론의 질책을 받고 또 법률적으로도 허용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률문화전통은 지금의 법에도 적용되어 있고 또 앞으로도 보존되어 나갈 것이다.

중국의 조정제도에 대해서는 서양의 많은 법률학자들도 아주 독특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중국에 와서 시찰도 하고 많은 연구를 한다. 또한 중국의 전통문화를 보면 형법에서 범죄를 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벌과 교육을 모두 병행시켜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다. 역대의 법을 보면 범죄에 대해 단순히 가혹한 징벌을 가하여 해결한다는 것은 통용되지 않았다. 현재까지도 중국은 범죄자에 대해 징벌과 교육을 모두 병행시키고 있다. 어떤 범죄자에 대해서는 명절이나 시골 일손이 부족할 때에 필요에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 명절을 지내고 일손을 도운 다음에 본래의 장역에 복귀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그 마을의 사람들 특히 노인들을 통해 범죄자를 교육하는 제도도 있다. 범죄자로 하여금 이런 과정을 통해 교육을 받게 할 뿐 아니라 범죄자 자신의 권리도 보호를 하게 했다.

개혁시대의 중국법제의 상황은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다.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앞으로도 경제적 발전단계에 따라 새로운 법을 많이 제정해야 될 것이다. 법률을 제정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국민들에게 법률이 무엇이고 또 법률로서 어떻게 자기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할 것이다. 중국의 사법부는 매년 수백만명의 법제선생원들을 농촌으로 보내 집집마다 방문하여 법을 설명하게 한다. 그 주요 목적은 국민들로 하여금 법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이렇게 하여 법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討論要旨〕

이종일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중국에는 조선족과 같은 소수민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에서의 소수민족의 법적지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주시고, 중국개혁에 따라서 토지소유권제도는 어떠한 변화를 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쟁샤니 교수: 중국에는 50여개의 소수민족이 있다. 인구상으로는 중국 전체 인구의 7/100을 차지하지만,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중국의 반이상이다. 중국의 역사를 보면 이들은 정치적·경제적으로 많은 제한을 받아왔다. 그래서 이 소수민족들은 연해지방을 떠나 내륙지방에서 생활하였다. 그러한 관계로 이들의 인쇄문화가 연해지방보다는 조금 뒤떨어지게 된다. 중국의 역사는 것은 중국내륙에 있는 각 소수민족과 중국에 있는 한족이 공동으로 창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문화과 경제의 발전에 중국의 소수민족들이 많은 공헌을 하였지만,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받아야 할 혜택은 많이 받지 못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된 이후에 중앙정부에서는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방에 소수민족자치기구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였다. 소수민족자치지방은 다른지방보다 경제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한족은 경제가 조금 더 발전한 지역에서 생활한다. 한족은 중국에서 경제가 상대적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더 낙후한 소수민족지방의 경제를 도와주고 발전시킬 의무가 있다. 소수민족에 대한 이러한 정책은 한족을 포함한 중국소수민족의 지지를 받고 있다.

다음에 토지소유권의 변화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토지는 국유화되어 있다. 국민들은 토지에 대해 사용권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어떠한 정부기관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사용권을 마음대로 박탈할 수는 없다. 따라서, 명의상으로 보면 국가가 토지소유권자이지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용권의 실질적인 개념 속에 상당부분의 실질적인 소유권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에서 고속도로나 철로를 새로 건설할 때에는 그 부근에 있는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상당한 손실보상을 해준다. 또한 농민들의 경우, 국가가 토지를 사용할 때에는 그들에게 보상을 해줄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직장과 주거를 해결해 준다. 중

국의 토지면적은 세계의 7/100정도 밖에 안되고 인구는 세계의 1/5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인구를 감당하기에는 조금 벅차다. 그래서 중국에는 토지관리법이 있어서 국가가 농민의 토지를 점령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의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현재 중국 정부가 봉착한 어려운 문제는 국가가 농민의 토지를 점할 경우 보상을 해주는데 농민에 대한 보상금이 너무 많아 정부에서 그 보상금을 지불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토지소유권이나 사용권에 관련된 문제는 중국뿐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다른나라에서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이들 국가에서의 선례가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안상술 (한국법제연구원 발간보급부장): 중국에는 지금 현재 제정공포된 모든 현행 법률을 수록한 현행법령집이 있는지 또는 발간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특히 지방성법규가 2,300여개 된다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을 수록한 법전이 있는지 또는 발간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쟁샤니 교수: 중국에서는 법령집의 편찬을 법제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법제부는 매달 새로운 법령집을 편찬해서 발간한다. 그리고 지방성법규가 2,300여개 있는데 「중화인민공화국 지방성법규」라고 된 큰 책이 발간되어 있다. 지금 중국인민대학에서는 법전편찬에 관해 두가지 일을 하고 있다. 하나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된 이후에 공포된 모든 법률·명령·기타의 법규에 대한 모든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국민들이 정확하고 용이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고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 또 금년부터는 중국인민대학과 중국의 최고법원에서는 건국이래 처음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판례집을 매년 공동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이 판례집은 매년 200만자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판례를 포함하고 있다. 대개는 공사권, 민사권, 경제사권 또는 행정권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판례집은 세곳에서 동시에 출판하는데 하나는 홍콩의 영어판, 대만의 한자판, 그리고 중국대륙의 한자판으로 출판하게 된다. 법대와 최고법원의 판례집 공동편찬은 법대 총학장과 최고법원장이 동시에 그 최고 임무를 맡고 있다.

장명봉 (국민대 법대 교수): 중국은 지난 수십년간 정치적 변혁을 경험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한 정치적 변혁이 중국의 법제도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그리고 특히 통치구조 등에 관한 헌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쟁샤니 교수: 먼저 등소평의 개혁과 헌법개정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중국은 헌법개정을 국회에서 하고 있는데, 헌법개정을 하는 한가지 이유는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함에 따라 시장경제원리의 도입으로 인해 전통적인 계획경제의 내용을 수정해야 함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개정된 헌법은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실시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시장경제원리의 도입에 따라서 정부는 경제에 직접 간섭하지 않고 기업의 대외 경제활동에 대해서도 직접 관할하지 않지만, 국가는 거시적인 경제 조절기능은 담당하고 있다. 국가의 경제에 대한 중요한 역할은 주로 경제입법을 통해서 경제를 조정하는 것이다. 개정헌법은 또한 '누구도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것은 이번 헌법개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헌법상에는 나라의 국유경제와 시장경제, 개인의 사유도 법률적으로 보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헌법을 통해 사회경제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게 된다. 지금 정부에서는 회사법과 공평경제법을 제정하고 있다. 공평경제법이라는 것은 서양에서 말하는 경쟁제한금지 또는 독점규제법을 뜻한다.

중국에서의 법과 정치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겠다. 중국에서 1976년 1월에 법제가 큰 타격을 받았다. 그때는 입법기관도 없어지고 법률질서도 없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 어떠한 정당이나 관리단체 또는 국민들은 모두 법률에 의해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된다. 중국의 역사에서도 그렇고 중국인민들은 중국공산당을 유일한 정당으로 생각하였다. 이 중국공산당은 국가의 최고 인민사회의 인도자선정이나 나라의 입법에 대해서도 공산당으로서 관여하게 된다. 그렇지만 중국공산당이 나라의 정치를 지도하는 입장일지라도 나라의 중대한 사항은 중국에 있는 여러개의 민중당파와 회의를 한 후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서 법률을 제정해서 그 법률로써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게 된다. 법률에 의해 중국공산당의 의견이 거부될 경우에는 그 주장은 효력이 없게 된다. 옛날 중국에서 보상법을 제정할 때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입법초안에 중국의 보상법을 제정해야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반대를 받았다. 몇년 후에 여건이 좋아짐에 따라 중국공산당

에서 제안한 보상법을 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국회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또한 중국공산당은 국가의 최고인도자에 대한 인사에 있어서도 먼저 중국민주당파와 협의를 하게 된다. 협의한 후에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도 많다. 중국에서는 중국공산당은 집권당이고 여섯개의 민중당파는 야당이다. 지금 중국의 정당제도는 중국공산당이 인도하고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때문에 중국에서는 중국공산당의 주장도 그렇고 다른 민중당의 주장도 그렇고 다른 사회단체의 주장도 마찬가지로 그 어떤 주장일지라도 나라의 의지로 운영되는 법권력기관의 법적절차를 통해서야 한다. 지금의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새로운 인도자를 선출하게 된다. 중국은 지금 공산당의 일당독재에 의한 공산주의를 체택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헌법에 규정된 국가주석은 아무런 권한이나 권리가 없는 하나의 군부통치자라고 생각한다. 국가주석도 개인적으로 군부문제를 결정할 권리가 없고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서만 직책을 수행할 수 있을 뿐이다. 때문에 국가주석은 나라의 상징으로서 개인적으로는 그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 실제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무원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되고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된 국무원 총리와 각 부의 부장, 위원회의 주임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지휘를 받게 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폐회하는 기간에도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는 많은 전문위원을 내세워서 정부의 사업을 감시하고 있다. 때문에 상무위원회와 상무위원회의 위원들은 부서에 따라서 국무원의 총리나 국무원의 각부의 부장들로 하여금 지휘를 받게 한다. 중국의 문화혁명은 중국국민들에게 잊기 어려운 귀중한 교훈을 주었다. 그 교훈의 하나는 모든 사람이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법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중국에서 민주제도가 법제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국민들의 공통된 의지이다. 민주화 법제를 파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국민들에 의해 질책을 받을 것이다.

문준조 (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 중국의 대외교역량이 급증함에 따라서 중국도 GATT에 가입할 필요가 있고 중국도 GATT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 가입방식에 대하여 알고 싶다. 또한 중국이 외국과의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그러한 분쟁의 해결방법으로서 중재가 이용되고 있는데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이 중국에서도 집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

쳉샤니 교수: 중국이 1949년도에 국민당정부시절 GATT에 가입을 했었다. 그런데 1950년에 대만정부가 GATT탈퇴를 선언했다. 그 뒤에 지금 중국이 다시 GATT의 회원국이 되고자 하는데 그 회원국이 되는 방식에 있어서는 새로운 가입의 방식이 아니라 복귀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해외 중재에 대해서도 많은 관례가 있었다. 중국에서는 두가지 중재가 있는데 하나는 국내의 중재이다. 이것은 주로 정부가 중재위원회를 구성해서 해결하는 것이다. 또 중국에서 중국의 기업과 외국의 기업 혹은 중국내에 있는 외국기업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외(섭외)중재에 속하는데, 중국에서는 지금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국제중재위원회에서 이를 담당한다. 그리고 이런 분쟁은 발생지의 중재위원회에서 중재한다.

외국에서 내린 중재판정을 중국에서 집행할 경우에는 국제관례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외국에서 내린 중재판정은 대부분 중국에서도 집행하고 있고 또한 중국에서 외국기업에 대해 내린 중재판정을 외국에서 집행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국에서 발생한 중국기업과 외국기업의 분쟁은 중재위원회에서 중재하는데 특히 중재위원회는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참가하고 있다. 국영기업도 법률상으로는 공식적인 법인이기 때문에 그 기업은 법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중국의 국영체계는 중국에서 국영기업과 국영기업사이에 또는 국영기업과 외국의 기업사이에도 여러가지 분쟁이 나올 수 있다.